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

-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여성: 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

장 애 리
(이화여대)

1. 서론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144만5,631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 오히려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과잉되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인구는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¹⁾에 있으며 향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1) 외국인 주민현황은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씩 증가하다가 2010년과 2013년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방문취업제(‘07~’12)’ 기간만으로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증가로 증가폭이 2.9%와 2.6%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매년 꾸준히 약 11%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보도자료).

감안할 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된다.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민족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소통이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쌍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다문화 사회의 발전 양상 및 특징에 입각하여 지역사회통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특별히 지역사회통역의 ‘수혜자’에서 ‘시혜자’로서 변모가 두드러지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발전 잠재력 및 한계 등을 통역학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기초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제언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

2.1 국내 다문화사회의 발전 양상 및 현황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²⁾로 정의되는데,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을 전제하며, 상호 공존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역사회통역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통역은 상호 불가분인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정의철(2012: 4)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건국 배경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처럼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구성원으로 출발하는 이민국가 유형이 있고, 독일과 영국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유형에서 출발했다가 이주민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발전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혈통주의를 강조하던 단일민족국가였다. 그러나 1980~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

2) 김찬환 외 (2010), 『시사논술 개념사전』, 복이십일 아울북.

나고, 2000년대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부터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후자 유형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다문화사회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경제적 가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차별 배제’ 모델에서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동화주의’³⁾ 모델로, 나아가 동등한 공존과 참여가 강조되는 ‘다문화주의’⁴⁾ 모델”(김은미 외: 2009)로 발전해 왔다. 정의철(2012)은 이민의 역사가 짧고 다문화의 경험이 부족한 후자 유형의 다문화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과 주변화 현상이 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도 예외 없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시작된 다문화사회 형성 초기에는 이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옹호는 배제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차별배제’ 모델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대부터 국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결혼이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점차 그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동화주의’ 모델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의 생활과 국내 적응을 돕는 생활과 민원 중심의 통번역서비스가 시작되었고 기타 사법과 의료 통역 등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선옥 2007, 심보선 2007, 정의철 2012, 김용희 2011)은 한 목소리로 국내의 다문화사회 관련 인식과 제반 정책이 동화주의와 온정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의 국내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그들을 ‘한국화’하고 이를 대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일방향적인 모델이다. 국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내용이 대부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채워지고, 관련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남편과 시댁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문화 관련 정책이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시행되고

3) “이주민 등의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주민의 정착, 적응, 동화에 초점을 둔다”(정의철 2012: 41).

4)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 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다양성과 관용 및 통합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정의철 2012: 41).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⁵⁾.

이와 더불어 정의철(2012)은 과거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던 정서가 이주민을 불쌍하며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온정주의 정서로 바뀌는 경향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는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나와는 다른 특별한 시혜의 대상으로 구별 짓도록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시혜정책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이주민에 대해 다시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해 점차 반감을 갖게 된다. 한편 정의철(2012: 44)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이를 ‘보여주기’ 식의 춤, 음식, 의복, 노래 등 다양한 문화적 전시로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실제적인 차별 등 구조적 모순은 외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국내의 다문화사회를 동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⁶⁾가 혼재하는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접근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다문화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어울리며 공존하는 사회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은 주류가 소수를 배제하지 않고, 주류의 방향으로 동화될 필요 없이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 즉 과거와 같이 이주민을 문화적 동화의 대상, 경제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과 공존은 실현될 수 없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서 받아들이며 이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울여야 하는 제도

5) 여성가족부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며 기존의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한계로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제고는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다.

6)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 가까운 다문화주의로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춤, 의복, 노래 등 표면적인 층위에 머물고 축소되며,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간 이분법적 틀을 전제하면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정의철 2012, 하윤수 2010).

적 노력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주민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통역의 활성화이다. 다음 절에서는 통역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통역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지역사회통역 현황을 개괄적으로 점검하여 ‘시혜’와 ‘수혜’사이를 오가는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사회통역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지역사회통역의 특징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⁷⁾은 해당 지역 사회의 공식 언어에 서툴고, 주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민들이 행정기관, 복지시설, 병원, 경찰서, 학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언어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 서비스이다. 주로 호주나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한 소통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밀착형 통역으로(강지혜 2004: 107, 강지혜 2009: 11) 통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의료통역, 법정통역, 학교통역 등 분야가 세분화된다. 글로벌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이민현상의 증가로 지역사회통역은 점차 전문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통역학 관련 학자들의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역 주체가 주로 비전문가, 자원봉사자, 이중 언어 구사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민족 및 다문화 국가로서의 역사가 오랜 일부 스웨덴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 그리고 지금

7) 강지혜(2009)에 따르면 지역사회통역은 *community interpreting*의 번역어로, 유사한 의미로 대화통역(*dialogue interpreting*) 또는 공공분야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지혜의 선행 논문을 좇아 『라우트리지 번역학백과사전』(2009)에서 사용된 *community interpreting*을 한글로 옮긴 ‘지역사회통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8)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2009:69)에 따르면 스웨덴은 일찍이 1968년에 지역사회통역사 양성을 목표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며 지역사회통역사 국가자격인증제는 1976년부터 시행되었다. 호주의 경우 디킨대학교와 맥쿼리대학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통역을 포함한 전문 통역사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NAT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ion and

까지도 지역사회통역은 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 이민자, 이중 언어구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근적으로 연속성 있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관련 통역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통역을 수행하는 직업 형태를 보인다. 물론 글로벌화와 함께 이민현상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통역이 점차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와덴스죄(2009: 67)의 언급대로 지역사회통역은 아직까지 주로 훈련받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통역사를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으로서 대우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의사소통 당사자 간 면대면 상황 속에서 통역이 진행된다. 지역사회통역은 통역사와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면대면(face to face) 상호작용’은 지역사회통역과 회의통역을 구별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강지혜 2004: 181). 통역부스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언어 및 준언어적(말투, 속도, 강도, 높낮이 등) 자원을 동원해 연사의 일방향적 발화를 통역하는 회의통역과는 달리 얼굴을 마주보고 수행하는 지역사회통역은 가까운 거리에서 언어와 준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자원(얼굴 표정, 제스처, 자세 등)과 필요에 따라 문서나 그림 등 도구도 활용해 통역할 수 있다(강지혜 2004: 182).

셋째, 짧은 순차통역 방식으로 양방향의 대화를 통역한다. 주로 질문과 대답이 인접쌍을 이루는 의사소통 당사자 간의 양방향 대화를 짧은 순차통역의 방식으로 통역한다. 일방향적인 독화(monologue)를 통역하는 회의통역과는 달리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의사소통 당사자 간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통역은 말순서의 교대(turn-taking)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Interpreters) 주관 하에 20개 이상의 언어조합에 대해 지역사회통역사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990년부터 오클랜드기술원(Auckland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6개 아태지역 제반 언어와 영어 사이의 지역사회통역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각 주별로 북극대학(Arctic College), 앨버타전문대학(Alberta Vocational College), 밴쿠버지역대학(Vancouver Community College) 등에서 각각 원주민어 및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아프리카 제어 등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통역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통역사의 발화빈도가 높으며 상호작용의 촉진을 위해 의사소통 과정에 통역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강지혜 2004: 181-185).

넷째, 통역 내용은 예측 불가능한 일상적 내용과 반복적인 전문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강지혜(2004: 182)와 와덴스죄(2009: 67) 등이 밝힌 바와 같이 지역사회통역에서는 회의통역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혹은 미리 준비된 원고나 자료를 중심으로 통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물론 세부 분야에 따라 의료통역이나 사법통역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통역의 경우 주로 환자와 의사 간 증상과 시술에 대한 대화 내용, 사법통역의 경우 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심문 내용을 통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야는 전문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내용을 통역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국제회의 통역에서 다루지는 내용의 전문성과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통역사에게 언어, 사회,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내 지역사회통역의 통역 대상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온 결혼이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언어가 미숙하여 겪는 소통의 불편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삭맨(Schackman 1984:18; 와덴스죄 2009:71 재인용)은 지역사회통역 상황에서 통역사는 “배경과 이해력이 사뭇 다르고 권력과 지식도 불평등한 관계에 놓인 전문가와 고객이 서로 만족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샌더스(Sanders 1992: 45; 와덴스죄 2009: 71 재인용)는 지역사회통역사가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권력의 간극까지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이고, 지역사회통역이 이들의 소통 경로로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뿐 아니라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고 계층과 권력의 간극을 메우는 문화 그리고 사회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여섯째, 중립 유지 및 의사소통 비개입 원칙 등의 통역 윤리가 비교적 유연

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통역 윤리는 통역사의 비밀 유지, 중립성 유지 그리고 의사소통 비개입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통역의 경우 면대면 상황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적 특징, 그리고 통역사가 언어 차원의 통역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권력의 간극을 메우는 중재자로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 불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 통역사들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의사소통 당사자 간에 ‘상호만족’과 ‘평등’을 추구하며 때로는 정확성을 희생하더라도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통역사’라기 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ell et al 1992, Wadensjö 1992, 1995; 와텐스죄 2009: 71 재인용). 그러나 원활한 상호작용과 상호만족을 위해 통역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소통에 개입하고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오히려 의사소통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며 기관의 조력자 혹은 이민자의 변론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통역사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통역사에게 기존의 통역윤리가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 전문 직업인의 관점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립성 유지 및 개입의 정도 등에 대한 규범과 현행 기준 혹은 관행 등을 안내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3 해외 지역사회통역 현황

본 절에서는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유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 그리고 선진 다문화사회의 사례로서 호주의 지역사회통역 현황을 고찰하여 국내 지역사회통역의 현실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일본은 단일 민족의 관념과 전통이 뿌리 깊고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이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사회 및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는 주로 일본의 구식민지인 한국과 북한, 중국 출신자인 ‘올드커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인정책이 시행되었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남미 등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도일한 ‘뉴커머’들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기준 외국인 인구가 200만을 넘어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주민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그 해 일본 정부 주도 하에 ‘다문화공생 추진을 위한 연구회’가 설립되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다문화공생플랜’이 제정되었다. 플랜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지역만들기’ 세 가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박영준 2013: 258). 그 중 지역사회통역과 비교적 관련이 깊은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은 첫째, 다양한 언어와 미디어에 의한 행정 및 생활 정보의 제공, 둘째, 외국인 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셋째, NPO(민간 비영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다언어 정보 제공 및 통역 자원봉사자 육성, 넷째,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다섯째,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을 다문화 공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말 그대로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주로 정보 제공 차원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적 니즈가 반영되는 서비스는 미흡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의사소통 서비스의 주체 역시 통역 자원봉사자와 관련 비영리기관 혹은 JET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일정한 전문성평가를 거쳐 상근 통번역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여 아직 비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호주는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이다. 과거 1970년대까지 백호주의를 기초로 한 동화주의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에 한계를 느끼고 1978년 연방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갈보리보고서(Galbally Report)’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게 된다(정상우 2008 :85-88).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언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1977년부터 NAT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라는 통번역 국립인증기관을 통해 적어도 20개 언어조합에 대한 전문 통번역사 및 지역사회통역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된 통번역인력들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역사회

회통역에 대한 인증뿐 아니라 교육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디킨대학교와 맥쿼리대학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통역사를 포함한 전문 통번역사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통역 및 번역가 협회(AUSIT)에서는 통역사 교육뿐 아니라 통역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비교적 선진적인 지역사회통역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와덴스죄 2009: 69).

호주는 19세기부터의 이민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급증으로 아시아에서 비교적 조기에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88년에 올림픽 개최와 함께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 결혼이민여성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에 2005년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포하고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호주 및 일본과 비교하여 외국인 이주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화는 비교적 빠르게 진전된 셈이다. 외국인주민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언어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의 20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82명의 통번역전담인력들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의 경우 행정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언어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반면, 국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서비스사업의 경우 내방, 전화, 외부 파견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이용자의 의사소통적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통번역전담인력들을 모두 결혼이민여성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일본과 같이 통번역 자원봉사자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임시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통번역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의사소통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기도 하다. 다만 국내 지역사회통역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서비스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등 기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통번역서비스는 외국인 관련 비영리기구 등에 의존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기타 외국인주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한 지

역사회통번역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역서비스라 할지라도 의료와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혜원 외 2010: 85). 이는 아직까지 지역사회통역과 관련하여 호주와 같이 체계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 지역사회통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통역사로써 어떤 잠재력과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4 국내 지역사회통역 현황

국내 지역사회통역의 경우 현재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상생활통역, 의료통역 그리고 경찰서와 법정 등 사법 절차 전반에 필요한 사법통역 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상생활통역은 주로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진행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⁹⁾의 통번역전담인력¹⁰⁾을 선발, 관리 및 육성하여 결혼이민자의 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총 20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82명의 통번역전담인력이 12개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¹⁾. 제공되는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의 교육과정 통번역 및 전화와 이메일 통번역서비스가 있으며, 외부파견업무로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행정 및 사법기관 그리고 병원, 학교, 경찰서 등 공

-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과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적응과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관(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10) 통번역전담인력은 통번역 직무능력 및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활용 능력 등에 따라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3등급으로 나뉘며, 통번역전담인력은 서류심사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중앙관리기관(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 및 출신국 언어 간 통번역능력에 대한 전문성평가를 거친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11)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공기관 이용 시의 통번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민원 통역은 결혼이민여성이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역할 전환하여 지역사회통역사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약하는 분야이다. 센터 내 통번역전담인력은 모두 결혼이민여성들로 충당되고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 외에 국내 정착 및 적응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법통역¹²⁾의 경우 외국인의 유입증가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합법적인 체류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 증가¹³⁾로 인한 수사와 공판,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각종 가정소송, 그 외에 특허소송, 난민지위 신청을 위한 행정 소송 등 외국인이 각종 민·형사 사건 및 행정소송 등의 당사자 혹은 증인으로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법통역의 필요성 및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이지은 2012: 14). 하지만 앞서 생활민원 통역이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사법통역은 통역을 필요로 하는 법원, 경찰 검찰 등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사법 통번역인원을 선발 및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인력풀 구축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사법통역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안성훈, 이지은 2012: 34). 물론 최근 사법 통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법정통역인편람』과 『난민사건용 법정통역편람』을 마련하고 역시 서울행정법원, 사법연수원, 부산지검, 일선 지역 경찰서 등에서 ‘외국인전문 사법통역 아카데미’¹⁴⁾, ‘통역인 워크샵’¹⁵⁾,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법통역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재판 절차와 법률 용어 설명

12) 안성훈, 이지은(2012: 31)은 사법통역을 민·형사 사건을 포함하는(주로 형사 사건) 모든 사법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통역으로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에서의 수사 과정, 법원과 구치소 등에서의 재판과정,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 형집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13)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외국인범죄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건수가 2012년도에 전년대비 9.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범죄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출처: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18).

14) 관련 내용 참조 <http://blog.daum.net/inbo23/44>

15) 관련 내용 참조 <http://mirei131.blog.me/20201164891>

혹은 재판 현장 체험 등 하루 일정의 1회성 교육 혹은 길어야 2~3주의 단기 교육으로 이루어져 단기간 내에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사법통역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일상생활 통역과 마찬가지로 사법통역 분야에서 역시 결혼이민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내국인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법률용어나 절차 등을 단기간 내에 얼마나 신속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통역의 경우, 현재 국내 의료통역은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통역과, 의료관광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상업적인 의료통역¹⁶⁾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차원의 의료통역은 현재 일상생활 통역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통번역지원사는 합격 후 신규교육 외에 년차 별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2년차와 3년차 통번역지원사들은 각각 30시간 정도 법률, 의료, 행정 및 교육 통역에 대한 기본 및 심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법률, 의료 등 각 분야가 모두 하나같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모든 분야를 합쳐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당 분야의 통역 품질을 담보 할 수 없다. 특히 의료통역의 경우 현재 의료통역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주요 통역대상은 의료관광객이며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외국인환자의 진료가 많은 과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의 의료통역은 통번역지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료통역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통번역지원사들에 대한 의료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16) 상업적인 의료통역의 경우 현재 국가차원에서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통역사를 포함한 글로벌헬스케어 1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글로벌헬스케어인재양성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설기관에서 관련 인력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통역사 역시 국가자격증화가 추진되면서 급격하게 관련 사설교육기관이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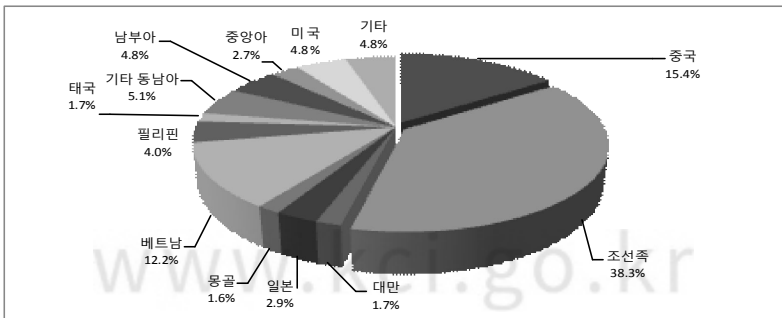
3.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여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미 다양한 지역사회통역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지역사회통역 활동에 대해 막연히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절하하거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니 통역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과대평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통역의 특성과 결혼이민여성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지역사회통역사로서 갖는 잠재력과 경쟁력은 무엇인지, 극복해야 할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1 결혼이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두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자는 국내에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국내 출신이 있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 온 이주민 출신 이중 언어 구사자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통역사로서 이주민 이중 언어 구사자가 더욱 유리한 것은 우선 이주민의 출신국이 다양한 만큼(그림 1과 <표 1> 참조) 다양한 언어 조합의 통번역 인력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주민으로서의 체험과 지역사회통역의 수혜 경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통역의 구체적인 니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외국인 주민 국적별 분포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표 1〉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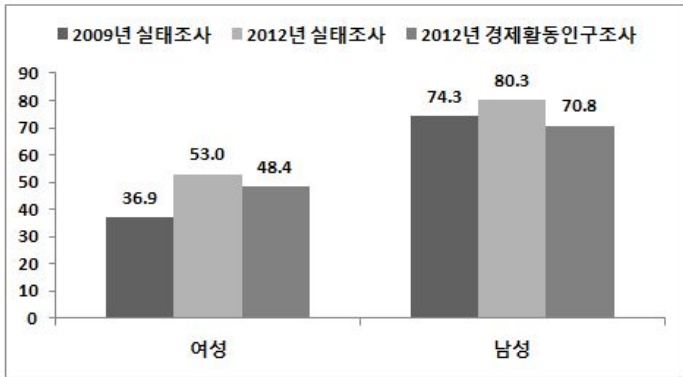
구분	결혼이민여성
전체	100.0 (226,084)
중국	24.1
중국(한국계)	31.5
대만, 홍콩	0.9
일본	4.6
몽골	1.4
베트남	22.1
필리핀	6.3
태국	1.5
캄보디아	2.3
파키스탄	0.0
우즈베키스탄	1.0
러시아	0.8
미국	1.0
캐나다	0.3
동남아시아 기타	0.5
남부아시아	0.4
서유럽	0.2
기타	1.1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렇다면 이주민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통역사로서 활약하기에 적합한 이유는 우선 국내에서의 생활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이나 일시적인 체류이후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여성은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사회통역사의 역할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통역이라는 직업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직종이며, 실제로 실무에서 활약하는 국내 통역사의 남녀 비율이 각각 11.9% 와 88.1%로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장애리

2011: 135), 결혼이민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79.8%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여성이 53.0%, 남성이 80.3%로 남성이 훨씬 높다(그림 2 참조). 이는 그만큼 결혼이민여성의 인력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 시장에서 남성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통역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며 취업시장에서의 취약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2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잠재력 및 한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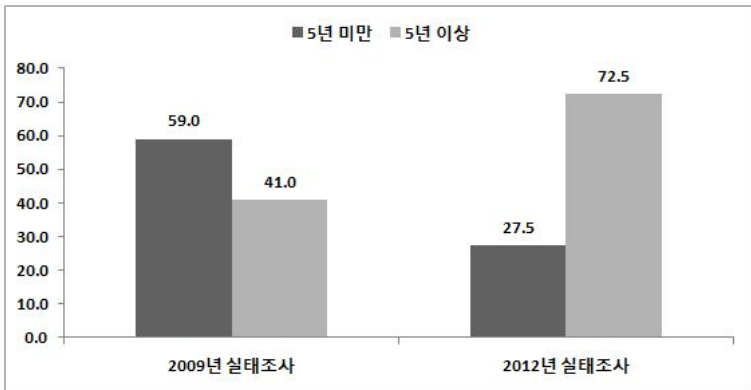
앞 절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유리한 배경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통번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이 지역사회통역사로서 갖는 잠재력과 한계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두 나라 언어 구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결혼이민여성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과거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어 균형 있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되는 통번역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69.8%¹⁷⁾(그 중 10년 이상 32.8%)이며, 한국어능력 향상과 관련된 질문에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3과 4 참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체류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친숙해져 양국의 언어와 문화 자원을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지역사회통역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언어와 문화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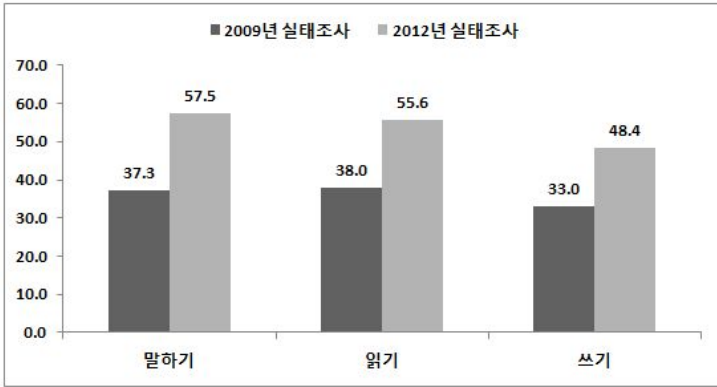
그림 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거주기간 단위: %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7) 그림 3에서 2012년 실태조사 시 5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이 72.5%로 나와 있으나 이 수치는 결혼이민여성과 남성 그리고 일반 귀화자를 합한 수치이며 순수 결혼이민여성의 5년 이상 체류 비율은 69.8%임.

그림 4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이주경험 및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특화 직종으로서의 개발

현재 지역사회통역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통역사들이 수행하기에는 보수 등의 대우가 너무 낮고, 현재와 같이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기에는 통역 품질의 한계와 오역과 의미 왜곡 등의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자원뿐 아니라 이주 경험 등을 활용하여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사회통역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통역의 특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통역 과정에서 언어뿐 아니라 준언어 및 비언어 그리고 도구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이중 언어를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라면 통역 스킬이나 전문성 등의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역사회의 통역 내용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며 사법과 의료 등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비교적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 역시 이중 언어를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고 고졸과 대졸 정도의 기본적인 학력 수준(<표 2> 참조)을 갖춘 결혼이민자라면 지역사회통역사로 활약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주경험 및 언어와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역사로 활약

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면서 직업적 성취감과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지역사회통역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여성
전체	100.0(226,08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3
중학교 졸업	23.5
고등학교 졸업	45.6
대학교 졸업 이상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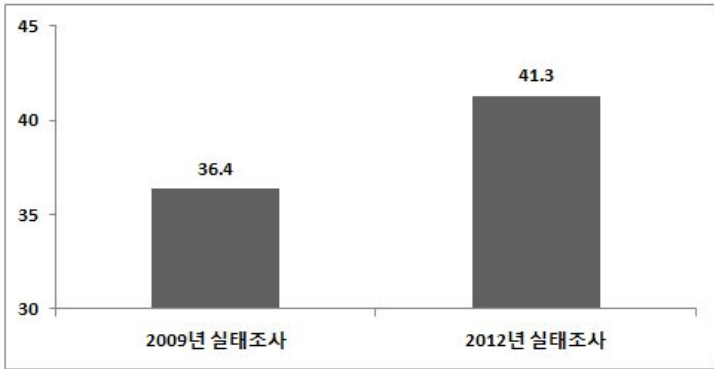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 직업 및 윤리 의식 강화 훈련을 통해 사회적 차별 등의 개인적 경험이 지역사회통역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현재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전담인력 혹은 법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지역사회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2012년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경험자 비율이 2009년 36.4%에서 2012년 41.3%로 4.9% 증가하였다는 것이다(그림 5 참조). 이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이민자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불어 다문화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비율이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 국내 다문화사회의 발전이 순탄치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통역의 관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결혼이민 여성이 통역 윤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통역사로 활동하게 되면 자칫 문화 및 권력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에서 시혜적 입장 혹은 감정입의 결과로 필요 이상의 개입을 통해 의사소통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주민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은 지역사회통역 업무에 경쟁력이 아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통역에서 의사소통의 특성상 통역사의 개입이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화된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관련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실천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결혼이민여성이 전문적인 지역사회통역사로서 활약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림 5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 (단위: %)



출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3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역사 양성방안 검토

1)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역 교육과 훈련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통역의 수요 증가로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교육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 방법, 내용, 기간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서의 일시적 필요 혹은 일부 지자체의 1회성 행사 등의 형식으로 매우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 인적자원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문적인 지역사회통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통역교육기관과 행정, 의료 및 사법 등 지역사회통역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이 공조하여 교육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2주 단위의 단기 훈련이 아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용어와 지식을 축적하고 언어능력뿐 아니라 통역 기술을 습득함으

로써 전문적인 지역사회통역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 교육 대상의 엄격한 선정

얼마나 우수한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는 크게 달라진다. 앞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민여성의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관련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많은 지원자를 모집하는 전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기본학력과 더불어 한국어 및 모국어 구사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지역사회통번역사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그간 불균형한 언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교육의 대부분을 한국어 교육에 할애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별 주제지식과 통역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생활, 의료, 사법 등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 수행

현재 지역사회통역이 필요한 분야는 크게 생활민원, 의료, 사법 등으로 나뉜다. 현재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시도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일상생활 분야의 경우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이 중앙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류심사 및 전문성 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지원사를 선발하고 있다. 서류심사, 전문성평가, 개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된 통번역지원사는 의무적으로 신규교육¹⁸⁾과 보수교육¹⁹⁾ 및 온라인교육²⁰⁾을 이수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통번역지원사로서의

-
- 18) 4박 5일 50시간 동안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통번역영역(8시간: 다문화 지역사회 통번역의 이해,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언어권 별 통번역 연습 및 실습), 한국어영역(12시간: 통번역 전담인력을 위한 고급 한국어), 기타영역(18시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영역별 법률의 이해, 행정실습, 직장 예절과 직업윤리, 한국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 전문가 특강 등), 주제토론 및 조별활동(12시간)으로 채워진다.
- 19) 현재 활동 중인 통번역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년차 별로 이수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이 다르다. 1년차는 40시간 동안 통번역관련 기초 지식 및 소양 교육을 받으며, 2년 및 3년차는 총 30시간 동안 법률, 의료, 행정, 교육 통번역의 기본과 심

재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 내용 중 지역사회통역사에게 특화된 직업윤리 즉 ‘통역윤리’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신규교육 과정에서 ‘직장에 불과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각주 19) 참조) 지역사회통역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역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문화 중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통역과는 다른 차원의 통역윤리가 적용될 수 있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통역과 상담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통역사의 의사소통개입 정도, 비밀 준수의 의무, 법적 책임 및 분쟁 소지가 있는 통번역 요청 시에 대한 지침 등 지역사회통역사에게 특수하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역윤리에 대한 교육이 신규 통역사들에게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사법통역의 경우 법무부 주관으로 역시 다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2011년에 실시된 보수교육을 끝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이지은 2012). 앞서 소개했듯이 사법연수원과 부산지검 등 사법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사법 통역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013년부터 이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사법통역 전문가과정’과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이 개설되어 사법 통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맥이 이어가고 있다. 통번역 전문교육기관에서 사법 통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성 워크샵이나 훈련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향후 사법통역의 전문화를 위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향후 통번역교육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교육 내용을 더욱 충실히 체계화하고 통역 훈련의 실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통역의 경우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코디네이터나 의료통역사에 대한 교육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결혼이주민들의 의료통역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하는

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4년차는 총 10시간 동안 통번역 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 20) 현재 활동 중인 통번역전담인력의 필수 이수 과정으로 언어, 연차, 지역, 수준 별로 1,2,3년차는 총 40시간, 4년차는 총 20시간에 걸쳐 통번역 전담인력을 위한 한국어 및 전문 강의, 다문화 상담, 언어권 별 통번역 이론 및 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에 대한 의료통역 교육은 보수교육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년과 3년차 통번역지원사들은 법률, 의료, 행정 등 특화된 전문분야에 대해 모든 분야를 합쳐 총 6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개별 분야들이 모두 전문성이 높고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의 생존내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교육 시간의 연장과 함께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도 함께 제고될 필요가 있겠다.

4)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

지역사회통역은 앞서 통역학적 관점에서 살펴 본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는 국제회의통역과는 달리, 언어 차원의 정보 전달뿐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입과 문화적 중개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복잡한 의사소통행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통역 경험이 없는 전문 통번역사에 의한 교육 혹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언어전문가에만 의존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사회통역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통번역사와 언어전문가에 의해 각각 통번역 기술을 습득하고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사회통역사들이 예비 통역사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이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역사의 윤리와 직업의식에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교육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즉 통번역전문가, 언어전문가, 의료, 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 간의 유기적 협력과 교육적 공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역사회통역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결론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통역사로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전사회적인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문화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신

되할 수 있는 통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지역사회통역사가 병원, 학교, 법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사회통역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비전문인과 자원봉사에 의존하여 이주민의 삶 혹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의사소통 문제에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지역사회통역은 영원히 일회성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직업적 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통역사로서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사회통역의 수혜대상마저 결혼이민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행부가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36%)이며 결혼이민자는 1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사회통역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난민 등은 상대적으로 통역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처와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동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나아가 난민 간에 의사소통 권리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전제될 때 수준 높고 믿을 만한 지역사회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통역사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번역 관련 종사자 및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39.

- _____ (2013)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14(5): 7-42.
- 고혜원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 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선영 (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9(1): 175-195.
- 김용희 (201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 대응: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2009)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
- 박영준 (2013)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4(0): 247-273.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2): 41-76.
- 안성훈, 이지은 (2012)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 연구』, 2012(5): 1-315.
- 이선옥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지은 (2012)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장애리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연구」,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상우 (2008)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외국법제정보』, 2008(10): 85-99.
- 정의철 (2013)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와덴스죄 세실리아 (2009) ‘공공 분야 통역’, 한국번역학회 옮김,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67-73.)
- Linell, P., C. Wadensjö and L. Jönsson (1992) ‘Establishing Communicative Contact Through a Dialogue Interpreter’, in A. Grindsted and J. Wagner (eds), *Fachsprachliche Kommunikation*, Tübingen: Gunter Narr, 125-42.
- Sanders, Marsha (1992) ‘Training for Community Interpreters’, from ITI Conference 6 proceeding, London: Aslib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45-50.

Schackman, Jane (1984) *The Right to Be Understood: A Handbook on Working with Employing and Training Community Interpreters*, Cambridge: Cambridge National Extension College.

Wadensjö, Cecilia (1992) *Interpreting as interaction: On Dialogue-Interpreting in Immigration Hearings and Medical Encounters*, Lindköping: Linköping University.

Wadensjö, Cecilia (1995) 'Dialogue Interpreting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Hermes*(14): 11-29.

통계청: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munity Interpreting
— Marriage Immigrant Women as Community Interpreters:
Potentials and Limitations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As of January 1, 2013, South Korea has approximately 1.45 million foreign residents, and of them, a total of 266,547 households are multicultural families. As such, it is no longer strange to say that the nation is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community interpret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potential and limitation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as community interpreters.

The study considered both the features of community interpreting as a discipline of interpreting studies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immigrants through marriage. It found that their greatest potential as community interpreters included their balanced bilingual skills, understanding of both cultures, a pool of human resources who can command languages of many countries, and experiences as immigrants who were also recipients of community interpreting. However, their negative experienc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y suffered as immigrants, may bias their interactions as interpreters. Therefore, they need to overcome such limitation through education of interpreting ethics.

▶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community interpreting, marriage immigrant women, daily life interpreting, medical interpreting, judicial interpreting

장애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한중전공 겸임교수

aili@ewha.ac.kr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지역사회통역, 통역교육, 문화능력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